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일원부지에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 1.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일원부지에 중학교 설립」

- 청원번호 : 40번
- 청 원 자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25번지, 이웅진 외 5,403명
- 소개의원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 교육위원회)
- 접수일자 : 2016년 4월 22일(40번)
- 회부일자 : 2016년 4월 26일

#### 2.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

- 청원번호 : 41번
- 청 원 자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260 강남한양수자인 아파트 419동 804호,  
김연지 외 3,213명
- 소개의원 :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강남4, 행정자치위원회)
- 접수일자 : 2016년 4월 25일
- 회부일자 : 2016년 4월 26일

## II. 청원요지

### 1.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일원부지에 중학교 설립」

- 강남구 세곡지역(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에는 초등학교 4개가 있으나 중학교는 1개교 밖에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함에 따라 세곡동 192번지 일대에 중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청원함.

### 2.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

- 강남구 세곡지역의 중학교 입학예정자수가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세곡동 192번지 일대에 중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청원함.

## III.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 1.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일원부지에 중학교 설립」

- 강남구 세곡지역 초등학교 출신중 대다수가 인근 세곡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하여 타지역 중학교로 배정되어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 당초 세곡동 192번지는 학교용지였으나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개발지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지역내 학생들의 학습환경 악화 및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우려됨
- 따라서 당초 학교용지로 지정된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함.

## 2.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

- 강남구 세곡지역은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총3개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지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지구에 있던 중학교 예정부지는 학교설립에 필요한 학생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어 학교 용지가 폐지되었음.
- 그러나 현재 세곡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은 2025년도 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곡중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원거리에 있는 수서중학교로 등교함에 따른 장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세곡중학교 배정지역으로 이주하는 세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세곡동 192번지 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함.

## IV.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타법개정)
- 청원법(법률 제1292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일원부지에 중학교 설립」 청원건은 2016년 4월 22일 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이용진 외 5,403명으로부터 청원번호 제40번으로 제출되었고,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 청원건은 2016년 4월 25일 김현기 의원의 소개로 김연지 외 3,213명으로부터 청원번호 제41번으로 제출되어 2016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는 바, 두 청원 모두 세곡동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동일내용의 청원입니다.

- 동 청원은 세곡 지역 인근의 중학교만으로는 향후 세곡지역 개발지구의 학생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이와 동시에 현재 수서중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세곡동 192번지 일대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세곡지역 개발지구 개요

- 세곡지역은 행정동 경계상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263,814㎡)와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940,361㎡),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771,121㎡)가 순차적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표-1] 참조**).
- 동 청원의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지역은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SH공사) 내에 위치한 곳으로, 2005년 당시 동 부지는 중학교 용지(10,762㎡)로 고시되었으나(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7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LH공사)와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SH공사)에 대한 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중학교 1개교(현 세곡중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강남교육지원청 재정과-9793),

- 이에 대해 강남교육지원청은 신설되는 세곡중학교와 인근 수서중학교의 교실 증축만으로도 모두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표-2] 참조), 2010년에 학교용지에 대한 해제요청을 하고 이로 인해 2011년 동 사업지구 내 중학교 용지는 해제된 바 있습니다.(강남교육지원청 재정과-616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호).

#### 나. 세곡지역내 학생 수 증가 및 통학불편에 대한 의견

- 현재 동 청원의 대상지인 세곡 지역의 경우 중학교가 세곡중학교 1개만 존재하는 반면 대상지역의 중학생은 지속적인 주택지구 개발로 학령인구 기준으로 2025년에 2,544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학급당 인원 34명을 기준<sup>1)</sup>으로 하였을 경우 약 69학급, 최대 2개 학교의 신설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3] 참조).

1) - 적정규모학교의 범위 및 적정배치 기준

구 분	학 생 수	학 급 수	학급당 학생수
초	360명이상~1,080명이하	18학급 이상~36학급 이하	20명이상~30명 이하
중·고	450명이상~1,260명이하		25명이상~35명 이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교육부, 2015.12)

- 이러한 학급수요 증가는 현재 세곡중학교와 인근에 위치한 수서중학교의 분산수용만으로는 수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2025년에는 세곡중학교의 경우 급당인원이 44.5명, 수서중학교의 경우 38.6명으로 예상되어 과대 학교의 모습을 띠 것으로 생각됩니다([표-4] 참조).
- 이는 적정규모의 학급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방침과 상반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업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현재 세곡 지역내 수서중학교로 통학하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구간(밤고개)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통학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등 통학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sup>2)</sup>.
- 예컨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분 정도를 적정 통학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지역의 실제 통학거리는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표-5] 참조). 이런 점에서 동 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현재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해제된 중학교 용지(세곡동 192번지)는 현재 행복주택으로 개발예정 중에 있고(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28호),

SH공사에서는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대체물량 확보의 어려움과 기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

[별표7]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

나. 학생의 통학범위 및 통학환경

1) 적정한 통학범위일 것

가)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통학거리가 도보로 30분 정도일 것

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통학거리가 30분 정도일 것

추진된 공동주택 재설계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그리고 행복주택건설을 기다리던 청년 주거복지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해제된 학교용지에 대한 부지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서울SH공사 택지계획부-1735).

○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교부지 확보와 수서중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문제가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학교신설에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7240).

○ 현재 대상지역내 중학교 용지의 확보 등의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동 청원의 처리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학생불편 해소를 위해 동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1] 개발지구**

구분	위치	개발업자	공급세대	입주시기	추정 중학생
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세곡동	SH	2,121	2011.01~2011.12	212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세곡동, 자곡동, 울현동	LH	6,687	2012.10~2014.12	1,022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자곡동, 울현동	SH	4,445	2013.06~2013.10	699

**[표-2] 학생배치계획**

개발지구	수 용 계 획											
	학 교 신 설					인 근 학 교 수 용						
	학교명	개교 시기	부지 규모 (㎡)	학급편성 현황			학교명	학급편성 현황			증축 현황	
학생 수				학급 수	급당 인원	학생 수		학급 수	급당 인원	증축 시기	증축 규모	
세곡국민임 대주택지구, 강남보금자 리주택지구	세곡중	2013.3	11,597	1,297	40(1)	33.3						
세곡2보금자 리주택지구							수서중	943	29(1)	33.7	2013.3	10실

※ 강남.서초 국민임대, 보금자리 개발지구 학생수용계획(행정지원과-6468, 2011.5.16.) 및 2011년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학생수용계획(행정지원과-11357, 2011.8.26.)

**[표-3] 중학교 입학생 변동 추이**

지 구 명	세대수	2016.1.31일 통별 학령인구 기준 중학생수							
		'21	'22	'23	'24	'25	'26	'27	'28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2,148	269	340	395	407	<b>356</b>	275	235	205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2,914	421	457	485	529	<b>640</b>	733	721	580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8,929	838	917	952	1074	<b>1227</b>	1208	1070	825
성남시 신촌동	1,742	178	174	194	189	<b>198</b>	193	219	221
세곡동 기존마을	1,875	86	101	115	123	<b>123</b>	122	103	117
<b>합 계</b>	<b>17,608</b>	<b>1,792</b>	<b>1,989</b>	<b>2,141</b>	<b>2,322</b>	<b>2,544</b>	<b>2,531</b>	<b>2,348</b>	<b>1,948</b>



[표-4] 세곡지역 학생 배치계획

- 미신설의 경우

구 분	중장기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지표상 연도별 급당인원)													비고	
	2016 (30명)	2017 (29명)	2018 (28명)	2019 (28명)	2020 (28명)	2021 (명)	2022 (명)	2023 (명)	2024 (명)	2025 (명)	2026 (명)	2027 (명)	2028 (명)		
수서중	학생수	519	561	596	578	655	779	938	1,034	1,069	<b>1,082</b>	1,055	989	906	시설 규모 : 30 학급
	학급수	24 (2)	24 (2)	24 (2)	24 (2)	30 (2)	30 (2)	30 (2)	30 (2)	30 (2)	<b>30 (2)</b>	30 (2)	30 (2)	30 (2)	
	급당인원	23.6	25.5	27.1	26.3	23.4	27.8	33.5	36.9	38.2	<b>38.6</b>	37.7	35.3	32.4	
세곡중	학생수	832	905	884	930	1,057	1,201	1,355	1,468	1,599	<b>1,737</b>	1,680	1,524	1,257	시설 규모 : 40 학급
	학급수	34 (1)	36 (1)	34 (1)	35 (1)	40 (1)	40 (1)	40 (1)	40 (1)	40 (1)	<b>40 (1)</b>	40 (1)	40 (1)	40 (1)	
	급당인원	25.2	25.9	26.8	27.4	27.1	30.8	34.7	37.6	41.0	<b>44.5</b>	43.1	39.1	32.2	

- 신설의 경우

구 분	중장기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지표상 연도별 급당인원)										비고
	2020 (28명)	2021 (명)	2022 (명)	2023 (명)	2024 (명)	2025 (명)	2026 (명)	2027 (명)	2028 (명)		
수서중	학생수	655	<b>252</b>	332	357	339	<b>279</b>	<b>217</b>	<b>176</b>	<b>213</b>	시설규모 : 30학급
	학급수	25(2)	<b>13(2)</b>	15(2)	16(2)	15(2)	<b>13(2)</b>	<b>11(2)</b>	<b>10(2)</b>	<b>12(2)</b>	
	급당인원	28.5	<b>22.9</b>	25.5	25.5	26.1	<b>25.4</b>	<b>24.1</b>	<b>22.0</b>	<b>21.3</b>	
세곡중	학생수	1,057	903	1,013	1,089	1,219	1,385	1,382	1,240	986	시설규모 : 40학급
	학급수	39(1)	35(1)	38(1)	40(1)	40(1)	40(1)	40(1)	40(1)	38(1)	
	급당인원	27.8	26.6	27.4	27.9	31.3	35.5	35.4	31.8	26.6	
신설중	학생수		833	956	1,064	1,118	1,163	1,144	1,105	972	2021년 개교 가정
	학급수		30(1)	34(1)	37(1)	38(1)	39(1)	38(1)	37(1)	33(1)	
	급당인원		28.7	29.0	29.6	30.2	30.6	30.9	30.7	30.4	

[표-5] 세곡지역 중학교 통학 여건

구 분	학 교	정류장에서 최장거리 단지 기준(네이버기준)		실측 통학시간	통학여건	비고
		거리	시간			
세곡2보금 자리지구 3,4단지	수서중	약2.85km	약25~37분 (마을버스3대, 지선2대)	약31~35분	밤고개로 이용 버스이용	승차시 약 300~900m, 하차후 약 400~800m 도보 이동
		약3.23km	약25~36분 (마을버스3대, 지선2대)	약30~35분	밤고개로 이용 버스이용	승차시 약 400~700m, 하차후 약 400~800m 도보 이동

## [붙임 1] 학교용지 취소 관련 경과

일 별	협 의 내 용	협 의 기 관
2005.01.11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 • 중학교 1교 신설 필요 ⇒ 중학교 용지 추가 요청	강남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2005.12.29	□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계획승인(2,282세대, 중학교부지 10,762m)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7호)	
2006.08.21	□ 서울세곡2(강남지구 1세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	SH공사→ 강남교육지원청
2006.08.22	□ 세곡1지구 중학교 학생수용계획 검토 - 수서중에 수용하고 이를 위한 보통교실 5~6개실 확보	내부결재 (관리과-10874)
2009.07.28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교육환경평가 학생수용계획 검토 •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증가학생 중학교 1교 신설 : 30학급(11,592m) •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증가학생 : 수서중 수용	내부결재 (재정과-8222)
2010.02.19	□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교육환경평가 학생수용계획 검토 • 인근 수서중 등에 교사 증축 수용 예정	내부결재 (재정과-1546)
2010.05.25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중학교용지 해제 요청 • 변경사유 :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 2차) 지구계획 승인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시범지구) 내 중학교 1교 신설 -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2차) 및 인접지역 : 수서중학교 증축 수용 - 저출산으로 인한 향후 학생수 감소	강남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SH공 사,서울시교육청
2010.12.24	□ 수서중학교 교사증축사업 협약 체결	SH공사, 강남교육 지원청
2011.02.25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중학교용지 해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호)	
2011.03.31	□ 2011년 정기투자심사대상 자료 제출(세곡중) • 강남 보금자리개발지구 증가학생 1,022명과 세곡 국민임대지구 증가학생 212명 및 기존지역 학생 123명으로 1개교(세곡중, 42학 급) 신설 설립 수요 발생	강남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2011.04.29	□ 2011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세곡중) ⇒ 적정	서울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
2011.07.11	□ 2011년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알림(세곡중) ⇒ 조건부추진(부대의견 : 향후 학령인구감소를 반영한 학교규모 축소)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
2013.01.	□ 2013년 본예산 편성(세곡중 신설비 : 18,546,779천원)	
2013.03.	□ 세곡중 개교(40학급)	
2014.09.~	□ 세곡지구 내 중학교 신설 요청 민원 제기 (세곡지구 주민연합회, 세곡사거리 연합회 등)	

[그림-1] 세곡동 지역 개발도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청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10.1.7.]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17호, 2010.1.7., 일부개정]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수사·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